

NEWSLETTER 698

Aug 11, 2022

「시장접근물량 증량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령(안) 입법예고 - 마늘, 매니옥 전분의 시장접근물량 증량 -

시장접근물량(TRQ)란, 각국이 수입 제한하던 품목을 관세화방식으로 개방하되 일정 물량에 대하여는 저율관세를 부과하고 이를 초과하는 물량은 고율관세를 부과하는 이중관세제도입니다. 「시장접근물량 증량에 관한 규칙」은 이러한 양허관세규정에 의한 시장접근물량을 증량하는 물품 및 물량 등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기획재정부에서 일부 개정령(안) 입법예고를 공고하였습니다. 이에 대한 주요 내용을 아래와 같이 안내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I. 개정 이유

- 최근 우크라이나 사태, 국제유가 및 원자재 가격 상승 등 대외요인에 의한 국내 영향을 최소화하고, 국내 생활물가 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시장접근물량 증량에 관한 규칙을 개정하려는 것임
- 시장접근물량 증량을 통하여 저세율 물량 확대에 따른 관련 산업의 경쟁력 강화, 물자수급 원활화 등에 기여 전망

II. 증량 대상 및 물량

1. 매니옥 전분

- 매니옥 전분의 경우 시장접근물량을 현행 14,300 톤에서 27,300 톤으로 증량

| 품목번호 | 품명 | 2022년 시장접근물량 | | | | |
|------|-----------------|--------------|--------------------------|------------|---------------------------------|---------------|
| | | 현행 물량 (A) | 증량물량 (B) | 합계물량 (A+B) | | |
| 1108 | 전분과 이눌린(inulin) | 2,400 톤 | 24,900 톤 (기존 11,900톤) | 27,300 톤 | | |
| 1108 | 1 | | | | 전분 | |
| 1108 | 14 | | | | 매니옥(manioc[카사바(cassava)]으로 만든 것 | |
| 1108 | 14 | | | | 1000 | 식품용 |
| 1108 | 14 | | | | 9000 | 기타 (식품용 외의 것) |

2. 마늘

- 마늘의 경우 시장접근물량을 현행 14,467 톤에서 24,467 톤으로 증량

| 품목번호 | | | 품명 | 2022년 시장접근물량 | | |
|------|----|------|--|--------------|-------------|---------------|
| | | | | 현행 물량 (A) | 증량물량 (B) | 합계물량 (A+B) |
| 0703 | | | 양파·샬롯(shallot)·마늘·리크(leak)와 그 밖의 파속의 채소(신선한 것이나 냉장한 것으로 한정한다) | 14,467 톤 | 10,000 톤 | 24,467 톤 |
| 0703 | 20 | | 마늘 | | | |
| 0703 | 20 | 1000 | 마늘(껍질을 깐 것) | | | |
| 0703 | 20 | 9000 | 마늘(기타) | | | |
| 0711 | | | 일시적으로 보존하기 위하여 처리한 채소(그 상태로는 식용에 적합하지 않은 것으로 한정) | | | |
| 0711 | 90 | | 그 밖의 채소와 채소류의 혼합물 | | | |
| 0711 | 90 | 1000 | 마늘 | | | |
| 0712 | | | 건조한 채소(원래 모양인 것, 절단한 것, 얇게 썬 것, 부순 것, 가루 모양인 것으로 한정하며, 더 이상 조제한 것은 제외한다) | | | |
| 0712 | 90 | | 그 밖의 채소와 채소류의 혼합물 | | | |
| 0712 | 90 | 1000 | 마늘 | | | |

III. 적용기한

- 2022년 12월 31일까지 적용

IV. 의견제출

1. 제출 기한

- 2022년 8월 16일(화)

2. 제출방법

-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 온라인 제출 또는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 제출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 단체의 경우 기관,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3. 제출처(기획재정부 산업관세과)

- 일반우편 : (30109)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77 정부세종청사 기획재정부 산업관세과
- 전화 044-215-4433 / 팩스: 044-215-8076 / 전자우편: kimsungchae@korea.kr

| 첨부자료 (아래 파일명을 클릭하면 해당 자료를 보실 수 있습니다.)

[붙임1] (법령안) 시장접근물량 증량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붙임2] (신구조문대비표) 시장접근물량 증량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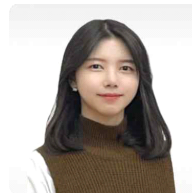
[붙임3]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시장접근물량 증량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 Contact



유다예 관세사

T 070-4353-1588
E dyyoo@esein.co.kr



황혜준 관세사

T 070-4353-1597
E hjhwang2@esein.co.kr



| 세인 홈페이지 | Newsletter 더보기 | 구독신청 |

세인관세법인의 뉴스레터는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발행된 것으로 공식적인 견해나 법률의견을 포함하지 않습니다.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세인관세법인의 홈페이지 또는 위의 컨설턴트에게 연락하시어 확인 바랍니다.

The newsletter of SEIN Customs & Auditing Corp. is published for the purpose of providing general information and does not include any official views or legal opinions. For more details, please check our website or contact the consultants mentioned above.

Copyright 2022 SEIN Customs & Auditing corp. All rights reserved.